

2002. 11. 11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產業建設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0.25	10.28	11.8	11.8	치수방제당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0.25	10.28	11.8	11.8	상수도사업소장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0.25	10.28	11.8	11.8	상수도사업소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위해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나.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질검사 대상항목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조정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검사항목의 증가로 인한 수수료 조정(안 제4조)

- 먹는 물 44항목(165,900원) ⇒ 46항목(184,000원)
- 먹는샘물(원수) 45항목(204,800원) ⇒ 46항목(211,400원)
- 먹는샘물(제품수) 49항목(223,600원) ⇒ 50항목(230,200원)

○ 학교 및 군부대 수질검사 감면대상 축소(안 제8조제4항)

- 정기검사에 한하여 50% 감면

○ 검사, 시험불용(안 제9조)

- 검사 시험이 불가능할 때 불용 ⇒ 관계공무원의 봉인이 없을 때, 봉인상태 훼손시, 검초소요량 부족 및 지정채수 용기가 아닐 때, 채수일 상당기간 경과시, 기타 사유로 정확한 수질분석 불가능시

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일부 조항의 개정·삭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원가 대비 저렴한 수도요금을 총괄원가의 95%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적자 해소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조정

- 총괄원가 : 622원/톤, 판매요금 : 544원/톤, 인상요인 : 14.3%
- 금회인상 : 8.8%(총괄원가의 95%), 판매요금 : 592원/톤

(동지역)

(단위 : 원/톤)

구 분	톤 당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현행	564	393	963	1,062	639	1,078
생산원가의 95%수준	581	431	1,015	1,119	679	1,147
	8.8%	9.7%	5.4%	5.4%	6.3%	6.4%

(읍·지역)

(단위 : 원/톤)

구 분	톤 당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옥탕1종	옥탕2종
현행	649	308	620	772	518	1,087
생산원가의 95%수준	706	337	654	813	548	1,158
	8.8%	9.4%	5.5%	5.3%	5.8%	6.5%

-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안 제36조)
- 규제완화를 위한 일부조문 정비
 -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을 수도사용자, 그의가족, 고용인, 동거인이였으나 고용인, 동거인을 삭제(안 제23조제4항)
 - 상수도요금 감면에 있어 중수도를 설치 완료하고 사용중인자를 빗물 이용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 시켰음(안 제40조제1항4호)
 -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를 시장이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수를 명할 수 있던 조항을 급수공사에 이상이 있을시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41조)
 - 상수급수 정비처분 조항중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를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로 정비 하였음(안 제43조제1항1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제297호('97. 1. 18)로 제정되어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사용에 대한 요금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왔으나 관련 조항중 불합리한 규제사항이 있어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 주민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함

나.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제388호('98. 11. 18)로 공포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부령의 개정으로 먹는물 수질 검사 대상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항목 및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
- 검사, 시험 불용관계 규정과 검사, 시험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자세히 열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수질검사 감면대상의 축소는 학교나 군부대의 명의로 타 개인의 검사의뢰가 될 소지가 있다하여 정기검사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규제를 강화하는 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됨

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조례 제92호('95. 1. 14)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원가의 상승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 총괄원가가 622원/톤에 판매요금 544원/톤으로 인상요인이 14.3%이나 시민의 부담수준을 감안하여 총괄원가의 95%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8.8%인상(판매요금 592원/톤)함은 적정하며
- 시민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상의 책임자의 축소, 상수도요금 감면범위의 확대,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를 급수공사에 이상이 있을 때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정수처분의 한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규제완화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점용을 받은자가 실제 점용을 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자의에 의한 선택이며, 하천 부지등의 매각시 기득권을 행사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 시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했으면 함

나.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개정안에 대하여 준칙이나 도에서 시달린 사항이 있는지?

○답변 : 시달린 사항은 없으며 업무 수행시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질의 : 검사수수료의 인하 용의는?

○답변 : 국립환경연구원의 규칙에 의한 것으로 인하불가

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등에 대한 행정규제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은?

○답변 : 사용자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른 책임한계 모호

▶ 질의 : 전용공업용수의 성격과 대상은?

○답변 : 중수도 성격이며 현재 우리시는 대상이 없음

5. 심사결과

-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의결(별지)
-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 임

-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2호중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를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생략) 2.소하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u>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u>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 ----- 1.(개정안과 같음) 2.----- <u>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u>